위험관리 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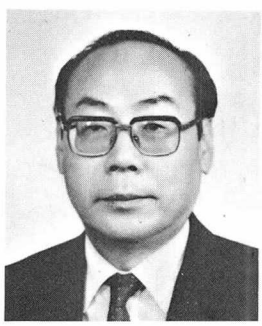

강 원 희
〈보험연수원 전임강사〉

3. 업종별 위험점검과 보험상품

우리의 주변에서 발생할 지 모를 위험의 발생원인은 업종에 따라 상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제조업, 판매업, 서비스업 등으로 구분해서 각각 위험의 점검과 이에 상응하는 보험상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중소제조업

중소제조업으로는 주물 및 금속가공업, 기계제조업, 전기제품제조업, 플라스틱성형업, 섬유제조업, 식품제조업, 인쇄업 등을 일괄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1) 위험점검

㈎ 화재 · 폭발 등 위험

① 사무소

다른 업체의 일반 사무소와 똑같은 위험상황이 존재하는데 담배꽁초, 난방기구, 급탕용 곤로나 각종 사무기기의 전기계통이 위험요인이 된다. 그 밖에 소규모 공장에서 작업용의 위험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위험도가 극히 높아진다고 하겠다.

② 작업장 · 공장

업종이나 작업공정에 따라 위험은 천차만별하다. 주요 위험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각종 용해로, 가마 등의 가열장치내에 있는 불씨
- 금속가공, 전기용접 등에 수반하는 불꽃
- 보일러 등의 열원장치 취급부주의
- 분진, 분말, 발생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
- 인화성, 폭발성이 높은 물질(도장재료, 신나, 에어졸, 인쇄용 잉크 기타 각종 화공약품)의 취급부주의
- 가연성 재료나 제품쓰레기 · 넝마 등의 처리잘못
- 기계설비의 배선 기타 전기계통의 사고
- 기계기름, 기름걸레의 관리불충분

③ 창고 · 포장작업장

- 자연발화, 인화폭발하기 쉬운 제품의 보관에 따른 위험
- 작업자의 담배불 부주의에 의한 출화
- 전기배선으로 부터의 누전

에 의한 출화

• 포장목공용 동력배선에서의 출화 등과 같은 위험이 예상된다.

㈏ 휴업손실위험

화재, 폭발로 전손이 발생한 경우는 물론 작업공정의 일부나 기계 1대에 사고가 발생해도 생산활동 전체를 중단하게 될 경우도 있어 휴업손실위험은 크다.

㈐ 자동차사고 · 상해사고 위험

• 재료 · 제품운반용 화물자동차나 자가용 승용차를 소유할 경우 대인 · 대물배상사고나 차량사고, 탑승자사고의 불안이 크다.

• 작업중의 상해(노동재해)사고 위험은 폭발, 도괴, 중독 · 약상(藥傷), 토사붕괴, 화재 · 고열물, 추락의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 배상사고위험

① 시설에서의 사고

• 공장의 철문이 노후되어 지나가던 행인이 부상한 사례가 있었다.

• 제약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인근 주택의 일부가 파손되거나 통행인이 부상한 사례도 있었다.

② 제조 · 판매한 물건에 의한 사고

• 유리병의 자연파열로 구입자가 얼굴과 팔에 상처를 입은 사례가 있었다.

• 가공불량의 솥을 사용한 주부가 손가락을 다치는 사례가 있었다.

2) 안전관리

중소제조업체는 화기의 사용량이 많고 전기시설도 복잡하므로 평소부터 소화시설을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방재설비도 양호한 상태로 유지시켜야 하며 방화훈련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3) 보험관리

각종 위험에 대비한 보험제도의 이용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 화재 · 폭발사고

• 보통화재보험에 폭발손해담보특약을 첨부한다.

• 위험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품할증을 적용받아야 한다.

㈏ 기계설비사고

취급부주의나 쇼트 · 아크 · 스파크 등의 전기사고와 기계적인 파손사고를 보상하는 기관기계보험이 필요할 것이다.

㈐ 휴업손실

각종 사고로 인한 휴업손실에 대비해서 기업휴지보험(이익보험)을 검토한다.

㈑ 자가용차사고

자동차손해배상보험외에도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다.

㈒ 경영자 · 종업원의 상해

• 경영자에게는 보통상해보험의 고액계약이 필요할 것이다.

• 종업원에게는 보통상해보험과 교통상해보험의 단체계약이 예상된다.

• 고용주배상책임보험도 검토의 대상이 된다.

㈓ 경영자의 부상 · 질병에 의한 소득상실

이와같은 위험에 대해서는 소득보상보험이 소요될 것이다.

㈔ 각종 배상사고

• 제조, 판매한 상품에 의한 배상사고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 소요된다.

• 공장시설에 기인하는 배상사고는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의 대상이 된다.

㈕ 유통과정에서의 사고

공장에서 출하되어 소매점에 이르는 유통과정(수송 또는 창고보관중)에서의 화재 · 도난 · 파손 · 수유손 등의 사고는 동산종합보험의 상품(제품)포괄계약을 이용하면 될 것이다.

나. 일용품 판매업

일용품판매업은 약국, 화장품점, 전기기구점, 철물점, 도자기점, 연료판매점 등으로서 이를 포괄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위험점검

㈎ 화재 · 폭발 등 위험

① 점포

겨울철 난방용스토브 등의 취급부주의를 제외하면 통상 그렇게 커다란 위험은 없는 업종이다. 그러나 약국, 화장품점, 잡화점에서는 점포앞에 판매대를 늘리고 염가품을 산적해 두는 사례가 많다. 이럴 경우는 손님이나 통행인의 담배불 부주의에서 출화하는 위험이 있다.

② 상품

약국, 화장품점, 잡화점에서는 벤젠, 신나, 알콜, 도료(페인트, 니스 등), 살충제, 헤어스프레이 등과 같은 위험품을 취급하는 사례가 많다. 화기주변에서의 취급부주의, 진동에 의한 낙하 등이 원인이 되어 화재 · 폭발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또 다른 원인으로 출화한 경우에도 이들 상품때문에 손해가 확대되기 쉽다.

③ 연료판매점

프로판가스, 등유를 취급하므로 화재 · 폭발의 위험도는 극히 높으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으로 상품의 보관방법이 규제되어 있으므로 상품자체가 폭발·발화하는 사례는 소비하는 장소에서의 사고 발생빈도에 비해 극히 적다. 오히려 점포내에서의 일반화재발생에 수반하는 손해의 확대가 불안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 휴업손실위험

이러한 업종은 취업희망이 적어 노동력이 부족하기 쉽고 인건비도 높다. 따라서 이재 휴업중의 이익상실이나 인건비 지출이 부담이 될 것이다.

㈐ 자동차사고·상해사고위험

• 자동차에 의한 배달업무는 전기기구점과 연료판매점에 많다. 특히 연료배달차는「위험물」이라는 표지판을 붙이고 주행하고 있으나 사고발생시에 적재연료가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할 위험도가 크다.

• 기타 업종에서도 점포주·가족·종업원의 교통상해위험이 염려된다.

㈑ 배상사고위험

① 점포시설에서의 사고

• 점포의 간판이 강풍에 떨어져나가 통행인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다.

• 진열상품이 진열칸에서 떨어져 손님을 부상시킬 수도 있다.

• 점포의 자동판매기가 쓸어져 어린이가 중상을 입은 사례도 있다.

② 판매한 상품에 의한 사고

• 약의 조제를 잘못함으로써 구입복용자를 사망시킨 사례가 있다.

• 전자렌지를 출장수리할때에 배선실수로 주부가 사용중에 감전사한 사례가 있다.

• 가솔린을 등유로 잘못 팔아 석유난로가 폭발해서 주택을 전소시킨 사례도 있었다.

2) 안전관리

이와같은 점포에서는 비치용 소화기를 항상 정상적인 상태로 완비해두고 종업원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에 대한 소양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3) 보험관리

㈎ 화재·폭발·점포에의 차량돌입 사고

• 점포건물과 영업용 집기비품, 상품 등은 보통화재보험에 폭발손해담보특약을 첨부한다.

• 차량의 돌입 등 기타 위험을 담보받기 위해서는 주택상공종합보험 등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 휴업손실

이재로 휴업중에 예상되는 영업이익의 상실이나 인건비의 확보에 대해서는 아직도 인식이 안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손해를 완벽하게 복구해주는 기업휴지보험(이익보험)의 필요성을 새삼 일깨워야 한다.

㈐ 자가용차에 의한 사고

강제보험인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은 물론이요 임의보험인 자동차종합보험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연료판매점의 경우에는 프로판가스나 등유 등을 배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보험대비책을 완벽히 해야 한다.

㈑ 점포주·가족·종업원의 상해

교통상해에 대한 불안은 어느 업종이나 강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보유자동차 200만대 수준에서 1만명을 상회하게 되는 극악의 상태에서는 자위책이 필요하며 더욱이 소규모점포의 종업원은 아무래도 급여수준이 낮아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실수익액이 적기 마련이다. 따라서 보통상해보험이나 교통상해보험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 전기기구점이나 연료판매점과 같이 배달업무가 있는 점포에서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더욱 크다.

따라서 이와같은 보험제도는 종업원의 복리후생면에서도 소망스러운 것임을 알아야 한다.

㈒ 점포주의 부상·질병에 의한 소득상실

점포주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쉬는 동안의 소득손실도 장기간일 경우 상당한 금액이 되므로 소득보상보험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하겠다.

㈓ 점포시설에서의 배상사고

점포시설내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사고에 대해서는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을 이용한다.

㈔ 판매한 상품에 의한 배상사고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소비자보호운동도 더욱 강화되고 있어 생산자 뿐만 아니라 판매자가 판매한 상품으로 생긴 손해배상위험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도 검토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하겠다.

〈다음호에 계속〉